

이사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(구성) 이사회는 이사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5 조(의장)

-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로 한다.
- ② 이사회 의장이 부재나 유고시에는 이사인 회장, 부회장, 사장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되, 회장, 부회장, 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상 Grade 구분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(이사회 종류 및 개최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에 1 회 이상 개최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7 조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. 단, 위의 소집권자의 부재나 유고시에는 제 5 조의 2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재적 이사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이 연명으로 회의의 목적사항, 회의소집, 희망일자 등을 명시하여 제 1 항에서 정한 소집권자에게 이사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이때 소집권자는 10 일 이내에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.
- ③ 제 2 항의 경우 그 청구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되거나 또는 청구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통지가 없을 경우 청구자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(소집절차)

- ① 의장은 회의일시 및 장소, 회의목적 사항을 회의 개최 직전일전까지 서면, 구두, FAX 및 기타 가능한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 9 조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이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,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포함되거나 의결정족수 산정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0 조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1.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전에 관한 사항
 2. 경영에 관한 사항
 - 1)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과 종합운영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
 - 2) 신규사업 및 관계회사 주식(자사주포함) 투자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

- 3) 사업계획 및 예산
 - 4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5) 사장 이상의 집행임원의 선임 및 해임.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함
 - 6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 - 7) 이사회운영 규정 및 중요사규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- 8) 이사회내 위원회의 운영규정 제,개정
 - 9)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,운영,폐지
 - 10)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11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, 이전 또는 폐지
 - 12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 합병의 결정
3. 재무에 관한 사항
- 1)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 또는 획득
 - 2)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타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
 - 3) 사채의 발행 및 모집에 관한 사항
 - 4)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
 - 5)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
 - 6) 신주의 발행 또는 주식의 소각
4. 이사에 관한 사항
- 1) 상법 제 397 조의 2의 승인사항 및 제 398 조의 거래
 - 2)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 겸임
 - 3) 집행임원 인사관리규정 개정, 집행임원 아닌 이사 및 감사의 처우에 관한 규정 제·개정
5. 기타
- 1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
 - 2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대표이사가 회사 경영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 11 조 (이사회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내에 각종의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
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
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그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12 조(위임) 이사회는 법령, 정관 및 본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.

제 13 조(관계인의 출석)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4 조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)

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다.

② 제 1 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.

제 15 조 (의사록)

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6 조 (간사)

① 이사회에 간사를 따로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회의의 소집통지, 의사록 작성 등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단 제 12 조는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